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일, 신영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9. 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1. 12.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12. 27.)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영대의원)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환경에 차이가 크고,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도 제약받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지민)

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용 지원(안 제16조)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16조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필수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2)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행 제16조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와 운행자의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와 교통약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콜센터’ 형태¹⁾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21년 8월 현재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도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충청북도 역시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점²⁾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16조제3항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또는 별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복수의 시·군 이동지원센터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1) 대부분 외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충청도청에 따르면, 8월 중 충청북도가 제출할 예정인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동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9월에 도의회에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6조제2항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합 운영 관련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박재호의원안(의안번호 2103258),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2108699)]이 현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음. 2020년 11월 17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
사소위에서 박재호의원안을 논의하였으나,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

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자금 지원 의무화

현행 제16조제6항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시·군 단위 이동지원센
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시·군
단위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
용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및 [별표2]
제71호³⁾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장애인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
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
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서 제외한다.

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제외하고 있음.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국비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송석준)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